

드디어 찾아온 '대학 자율화 시대'

도정일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 988년을 기해 대학을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최근 방안은 해방 50년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회적 교육적 정책 전환의 계기 하나를 열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유무는 한 사회의 자율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번의 대학 자율화 방안은 우선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자율성의 사회적 확대라는 근대 기획의 산물이고, 대학의 이 자율성은 학문/교육 영역에 대한 권력(서구 문맥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간섭과 통제, 감시와 처벌이 포기되고 거부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학문/교육의 영역에조차도 자율성의 확대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회가 근대적 '민주사회'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은 사회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 하나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미완의 과제인 전반적 '사회 근대화'를 추진하고 실현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근대 사회가 사회의 여러 소우주(小宇宙)들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유는 자율의 박탈보다는 자율의 보장이 사회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발견과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개인 주체들과 집단들을 어떤 전체적 통제구도 속에 종속시킬 때는 자발성, 창의성, 능동성의 희생이 불가피하고 이 희생은 사회발전에 극히 유해하다. 그런 식의 통제사회는 일종의 집단적 노예사회이며 노예사회의 개인/집단들은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와 강제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위의 자율적 동기를 갖지 못하고 행위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 민주사회란 노예 아닌 자율적 주체들의 사회이며, 이 사회에서의 대학 교육의 목적은 자발성, 창의성, 능동성을 가진 책임 있는 사회적 자율주체의 생산이다. 그러나 자율주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의 대학 자율화 방안이야말로 해방 50년사상 '처음으로' 대학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시키는 교육정책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율주체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대학 자율화가 '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민주사회의 자율주체를 '자기 행복과 운명의 자율적 관리자'라 규정할 때, 운명의 자율관리라는 개념 속에는 개인의 능력이 확립적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이 권리는 능력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원칙과, 다양한 능력들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라는 가치 판단에 근거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던 '교육 왜곡'은 다양성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교육 현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재능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교육, 획일적 잣대로 피교육자의 능력을 재단하는 교육은 운명의 자율관리자로서의 자율주체를 길러낸다는 교육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악명 높은 '대학입시'는 이 왜곡의 주범이지만 왜곡을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한 책임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지 않은 정책의 경직성에 있다. 대학 자율화는 이 경직성의 제거라는 점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극히 중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화가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제도적 경직성을 철저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학 자율화 방안 속에 신입생 선발에 관한 자율권 보장이 포함된 이상, 기존의 수험능력 시험은 전면 폐지하든가 수능시험 성적 반영 여부를 대학의 자율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이 존재하는 한, 대학들을 세칭 1류에서 3류까지 위계서열로 줄세우기를 해온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 고질적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이 관행이 남아 있는 한, 신입생들의 대학 선택은 자율보다는 타율에 더 많이 지배되고 그 선택폭도 좁아진다. 대학의 입시 기준이 다양화되어야 다양한 재능의 발굴이 가능하다.

둘째,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 속에는 '선발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권리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대학이 자체적 능력평가 기준으로 유자격 입학자를 뽑을 때에는 당연히 무자격자에 대한 배제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평등' 개념의 왜곡된 인식과 정치적 고려, 일부 대학의 운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입학정원'은 무조건 채워야 하는 기묘한 관습을 지켜왔는데, 이 관습은 차제에 없어야 한다. 또 대학의 배제권 행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항의를 막아줄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 자율성의 법적 보장과 보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대학 자율화의 길에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 문제와 장애 요소가 없지 않다. 예상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대학 자체의 자율역량이 모든 면에서 반드시 성숙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사학의 경우, 대학이 왜 있으며 무엇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대학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영자들이 있고(예컨대 기독교 재단 계열의 일부 대학에서는 신학대학이 아니면서 교원 자격으로 반드시 '기독교 신자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근대적 '대학이념'과 정면 상치될 뿐 아니라 '위헌적'이다.),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들도 상존한다. 이 사실은 우리의 역대 정권들이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연기하는 데 유용하게 동원해온 주요 구실의 하나였다. 이 구실의 현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한, 98년 이후의 완전 자율화와 함께 여러 형태의 과도기적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이 가능성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식의 부정적 요인으로 또다시 작용할 필요는 없다. 대학은 자율권의 완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위한 대학 자체의 자율적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고, 사회는 대학의 자율권 행사 자격에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바로 대학 자율권 수호의 이름으로 그 결함을 다스릴 사법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도정일/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 미국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교환연구원과 중앙통신사 외신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등이 있고, "현대 미륵문학의 상상력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